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09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전현희 · 서영석 · 이학영
김용만 · 김남희 · 김한규
김문수 · 홍기원 · 백혜련
이건태 · 이언주 · 김영환
유동수 · 노종면 · 조계원
송재봉 · 임미애 · 정일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패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

제106조제1항제11호 중 “기저귀와 분유”를 “분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패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① ----- ----- ----- -----.

